

광진구 중곡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중곡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“보장협의체”라 한다)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“중곡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

제2장 위 원

제3조(구성 및 기능)

- ① 보장협의체 구성은 10인이상 30인이하로 하며, 당연직 위원(동장) 과 협의체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- ② 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2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·개인
 3. 지역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 4. 동장, 주민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
- ③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 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발굴
 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·지원
 3.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공동 지역특수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방 안 모색

제4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(동장, 간사)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동장은 위원이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회비) 위원의 회비는 월 1회, 위원당 20,000원정도로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7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감사)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감사, 사무국장을 둔다.

1. 위 원 장 : 2명(공공부문, 민간부문)
2. 부위원장 : 2명
3. 감 사 : 1명
4. 사무국장 : 1명

제8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장한다.

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,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2.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 보장협의체 임원의 직무는 각 호의 사항과 같다.

1.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회의 및 역할

제10조(회의)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진행한다

1. 위원장은 해당 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1/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2.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협의체 복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(동 주민복지팀장)를 둔다.

제11조(역할)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.

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
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·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
3.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
4.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, 승인 및 시행지원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제12조(간사)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 처리한다

1.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되, 간사는 동주민센터의 주민복지팀장으로 한다.
2.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장 회의록

제13조(회의록 작성) 회의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한다

1.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

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- ①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- ② 회의 참석자 명단
- ③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
- ④ 협의사항 및 회의결과
- 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2.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·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.

제6장 기 타

제14조(비밀준수)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업무 이외의 목적 및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의견의 청취)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